

[별표 3] <개정 2009.11.26>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설치지역·설치조건(제18조제2항관련)

대상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1. 산림경영 및 임산물의 생산 등과 관련된 시설		
가. 임도	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한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계·시설기준
나.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을 제외한다)	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한 산지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 임산물의 생산시설 또는 집하시설	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한 산지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라. 임산물을 가공·건조·보관하기 위한 시설	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한 산지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마. 비료·농약·기계 등 임업용 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한 산지	임업인이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바. 운재로 및 작업로	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한 산지	운재로 및 작업로의 너비는 3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향곡선지·차량대피소 및 차를 돌리기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사.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산지전용제한 지역을 제외한 산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산림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산촌산업개발시설로서 임산물 공동저장·판매·가공·이용시설 (2) 산촌휴양시설로서 임업체험시설, 산림문화회관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제한없음	(가)산불감시탑·방화선·간이무선통신 시설·간이저수조·간이헬기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최소한의

보전·관리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행·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시설		면적일 것 (나) 재해예방·재해복구·재난수습을 위한 시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것 (다)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시설 또는 보호수 보전·관리시설로서 최소한의 면적일 것
3. 수목원,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전망대시설, 수목장림(「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신고된 수목장림 구역을 말한다) 및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목재이용의 홍보·전시 및 체험·교육시설	제한없음	(가) 자연휴양림·산림욕장·전망대시설 및 자연관찰원·산림전시관·목공예실·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산림교육자료관 등 산림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나)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의 너비는 2미터 이내일 것 (다) 수목원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라) 목조건축물의 건축 등 목재이용의 홍보·전시 및 체험·교육시설에 필요한 적정 면적일 것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제한없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산림과 관련된 학과·학부 등이 설치된 학교가 임업시험연구 및 산림과 관련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5.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	준보전산지	농림어업인이 자기 소유의 산지에서 직접 농림어업을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에 관

		하여는 제12조제4항을 준용하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농림어업용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농림어업인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백제곱미터 미만일 것
7. 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	제한없음	평균 경사도 35도 미만인 산지에 설치할 것. 다만, 연구·조사를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제1호 내지 제7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각각의 지역	제1호 내지 제7호의 설치조건 등 부지면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지면적 안에서 설치될 것
9. 가축의 방목	준보전산지	제12조제11항제6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문화재보호법」 제91조에 따른 지표조사일 것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가. 관상수의 재배 나. 그 밖의 품목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이 경우 당해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임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림어업인이 평균경사도 30도 미만인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준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면적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산지 안에 생육하고 있는 입목 중 50년생 이상인 수목의 비율은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 니할 것
12. 물건의 적치	준보전산지	제12조제11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 할 것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 미한 시설 가. 누에사육시설 나.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 계 창고 다.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 장 또는 그 가공시설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3천제 곱미터 미만일 것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의 한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3천제곱미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미 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1천제곱미터 미만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이 경우 부지면적은 다음의 구분에 의 한다. (1) 5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 미터 이상의 산지에 산림경 영을 하는 경우 : 3천제곱미 터 미만 (2) 5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에 농업경영을 하거나 3만제곱 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림경 영을 하는 경우 : 1천제곱미 터 미만 (3) 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인 경우 : 1천제

라. 농막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공미터 미만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마. 산림작업인부 대피소 등 산림작업에 필요한 시설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만한다)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바. 법 제26조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하여 시추하는 시설	산지전용제한지역·토석채취제한지역을 제외한 산지	법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사. 농업용수 개발시설	산지전용제한지역 및 공익용산지를 제외한 산지	농림어업인등이 농림어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 5제곱미터 미만이고,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일 것

※ 비고

1.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는 제1호·제5호·제6호·제9호·제11호·제12호 및 제1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호 바목·사목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재배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제3호의 임업인을 말한다.